

『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기금 회계관직을 일치시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1조, 제2조제4호, 제12조제2항)

나.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(안 제10조제1항제1호)

(현행) 기금운용관 : 도시건설국장

(변경) 기금운용관 :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

법률」 제6조의2
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,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운용관의 회계관직을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제명 변경, 회계관직 일치를 통해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